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가단5076644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지배인 B,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환, 이정하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5. 10.

## 주 문

- 피고와 E 사이에 2021. 11.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6,9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6,98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가. E는 2018. 4. 3.경 F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17.9%, 연체이율 연 24%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F 주식회사는 2019. 3. 8. E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원금 47,876,009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9. 3. 21.경 E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893899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23. “E는 원고에게 43,325,610원과 그중 21,936,009원에 대하여 2022.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E는 2021. 11. 19.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21.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22. 1. 28.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의 E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사채업자인 G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 G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E는 시가 52,3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6,935,5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Phaeton 3.0 TDI 승용차, 시가 529,635원(= 1,059,270원 × 1/2)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중 1/2지분(I과 공유하고 있으므로 1/2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의 합계 59,765,135원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원고에 대한 원금 47,876,000원 상당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615,000원 상당의 J회사에 대한 채무, 근저당권자 G에 대한 39,220,000원 상당의 근저당채무, 합계 87,711,00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E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E가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E가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와 E의 관계, E의 재산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과 취소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취소 및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2. 1.경 시가가 56,2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9,220,00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6,980,000원(= 56,200,000원 - 39,220,000원)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6,980,000원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16,9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6,9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98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임상은

별지